



組織化된 環境保全 運動의 必要性

—協會 名譽會員의 적극적인
活動을 기대하며—



具然昌
(本報 編輯委員)
(경희大 法科大學長)

바야흐로 우리 社會는 오랜 동안의 所望이었던 「民主化」의 발전을 위해 學園, 企業 및 社會 모두가 큰 陣痛을 겪고 있다. 그러나 民主化란 그 成就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民主主義가 定着化된 先進諸國의 現狀況을 보고 하루 속히 우리 社會에도 民主主義를 實現·定着시키고자 하는 의욕은 커지만 그 성취는 뜻만 같지 못하다. 西歐의 民主主義는 實體의 직접적인 實현보다는 오히려 節次의 발전·정책을 통하여 성취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부단한努力과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環境問題의 해결은 우리에게 있어 民主化的 성취보다도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듦다. 이른바 環境容量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與件下에서高度의 經濟成長을 양보할 수 없는 目標로 설정해 놓고서는 環境問題의 해결이란 지극히 어려운 일임이 自明하기 때문이다.

環境保全對策을 推進시키는 힘이 政府側 또는 市民側으로부터 나오기도 한다. 간혹 開發途上國에서 政府主導型의 環境對策의 추진을 볼 수 있긴 하지만 대개의 先進諸國에서는 市民主導型의 인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어떻든 몇몇의 環境專門家만이 아니라 一般市民의 環境意識 나아가 環境保全에의 意志如何가 궁극적으로 環境對策의 成敗를 좌우하게 된다.

民主的인 政府가 그리고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指導者들이 적극적인 環境規制에 있어 主導的役割을 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히려 강력한 社會的 要請에 의하여 壓力を 받아 움직이기를 더 좋아한다. 이러한 소극적인 방법이 弱點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民主主義의 價值觀과 일치하며 가장 근원적일 수 있다. 여기에 궁극적으로는 市民의 環境意識水準의 向上과 그들의 참여가 環境對策의 추진에 原動力이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1972년 美國 Gallop 調査에 의하면 環境改善 을 위하여 増稅의 형식에 의한 國民의 負擔加重에 대하여 이를 반대하는 美國市民은 전체의 6 %에 불과했으며, 市民의 28 %가 이 目的을 위하여 매년 50불이상을 내놓을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오늘날의 美國의 環境政策의 성공적인 전개는 이와 같은 環境保全에 대한 市民의 意識 確立下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우리의 環境問題를 논의함에 있어 美國의 例를 든다는 것이 적절치 못한 점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좋은 참고는 될 것으로 본다. 좋은 環境을 보존하여야 한다는 意志는 미국에 있어 결코 최근에 와서 나타난 것은 아니다. 美國의 環境立法 내지 行政을 추진하는 背後에는 美國의 自然을 破壞로부터 지키려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自然保護運動이 자리잡고 있다.

1970年代初에 美國에는 이미 3,000이상의 環境關係의 組織이 설립돼 있었고, 全國的 規模의 조직을 가진 것이 National Waterborne Association, Sierra Club, Izaak Walton League, National Audubon Society 등 150여개나 되었다. 이들 團體들은 自然 및 資源의 보호를 위한 汎國民運動을 전개해 왔다. 이들 단체들은 運動을 통한 意識의 提高와 市民參與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環境訴訟이라는 法的手段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環境保全運動의 실효성을 높여 왔다. 環境訴訟의 대부분은 이들 團體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 團體는 辯護士, 醫師, 科學者등 전문가들의 協力を 얻어 보다 전문화된 기초 위에서 運動을 전개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環境保全立法이나 行政의 發展過程을 보면 비록 거북이 걸음이긴 하지만 徐徐히 점진적인 발전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963년 公害防止法이 제정된 후 1971년의 改正과 함께 同法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1977년의 環境保全法의 제정은 우리나라 環境立法 및 行政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다. 1980년엔 環境行政專擔의 環境廳이 신설되었고, 第5共和國憲法에서는 環境權

이 憲法上의 權利로서 明文化되었다.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環境保全法은 그 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확충하기 위하여 1979년과 1981년 두 차례의 改正을 가졌다. 排出賦課金制의 채택은 특기할만한 것이었다. 또한 1981년 2월부터는 環境影響評價制度가 실시되었다.

이렇듯 한결음씩이나마 漸進的으로 우리의 環境對策이 발전을 거듭해온 것은 市民主導의 壓力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몇몇의 環境關係의 엘리트의 역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學界나 言論界의 엘리트로부터 직접·간접적인 協力과 함께 지금까지 主導的 役割을 해온 것은 行政府內의 環境엘리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들의 역할이 뚜렷하게 된 것은 1980년 環境廳의 設置이 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環境問題 解決에 있어 政府內의 環境엘리트의 役割은 이제 限界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이러한 느낌의 根源은 現政府組織體系下의 環境廳의 地位에서 비롯된다. 지금까지 政府內의 環境엘리트들이 성취시킨 것은 環境立法을 통한 環境對策方案의 수립이었다. 그러나 그 實效性있는 施行은 결코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開發途上國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環境對策의立法과 그 施行 사이에는 현저한乖離가 있다.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國家政策決定過程에 있어 環境問題가 하나의 主要한 要因으로 配慮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러나 現行政府組織體制下에서는 國家最高政策審議機構인 國務會議에서 環境問題를 적극적으로 提起시켜 政策決定에 反映시킬 수 있는 契機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못한 것이 실정이다.

88올림픽과 관련하여 環境對策의 積極化의 필요성에 따라 최근 마련된 方案에서도 政府主導型의 環境對策의 限界를 느낄 수 있다. 政府는 環境廳의 기구화장이나 地位格上을 도모하지 않고, 대신에 環境保全委員會와 같은 漸定的이고도 기구성격 자체에 脆弱性을 지닌 方案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자칫하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



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그런대로 漸進的인 발전을 거듭해온 環境廳의 기능을 좌절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政府主導型의 環境對策의 推進을 순조롭게 持續시키기 위하여는 環境廳을 國務總理 소속하에 環境處로 格上시키고 環境處長을 國務委員으로 하는 方案이 채택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나라 環境對策의 推進에 있어 市民主導型의 轉換을 해야 할 時點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내지 76년이 政府主導型의 環境對策의 推進이 적극화하기 시작했던 때로 볼 수 있다. 10년의 성과를 더욱 지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市民主導型의 支援이 불가결하다고 본다. 물론 지금까지 市民의 環境保護나 自然保護를 위한 運動이나 公害告發運動이 없었던 것

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헐적·일시적이었고 너무나 非組織的이었고 小規模였다. 이제는 恒久의이고도 組織的인 環境保護運動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마침 環境保全協會에 名譽會員이 12,000명이나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組織的인 環境保護運動에 더없이 좋은 기틀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보다 건설적인 環境保護運動을 꺼내갈 것을 제안하고 싶다. 市民主導型의 環境對策의 推進이 열핏 보기에는 지금까지 익숙해왔던 政府主導型의 것과 相衝되는 것 같을지 모르나 오히려 相互補完的 效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안을 하면서 꼭 일리두고 싶은 말이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리고 「한술 밤에 배부르랴」이다.*

環境保全상담안내

社団法人 環境保全協會에서는 環境保全에 관한 技術指導 및 啓蒙事業의 一環으로 「環境保全相談室」을 設置運營하고 있는바 本相談室에서는 政府施策弘報, 関係法令解說, 公害防止関聯技術相談, 自家測定方法指導, 其他建議 및 險路問題相談등을 無料実施하고 있으니 많은活用을 바랍니다.

상담실 전화번호 (753) 7640 (753) 7669

社団
法人 環境保全協會

— ● 투고 안내 ● —

會員 여러분들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각 회원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연구·개발 현황, 공지사항 그리고 제언이나 시·수필 등을 수시로 본 협회 홍보부(753-76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 국문으로 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 팔호내에 원어(한자 또는 영어등) 사용이 가능합니다.

* 게제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지불하여 보내주신 원고는 일체 반환치 않습니다.

